

[Editorial Review]

#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Plagiarism in Research Ethics and the Guideline of Global Journals for KODISA

## KODISA 연구윤리의 표절 판단기준과 글로벌 학술지 가이드라인

Hee-Joong Hwang(황희중)\*, Dong-Ho Kim(김동호)\*\*, Myoung-Kil Youn(윤명길)\*\*\*,  
Jung-Wan Lee(이정완)\*\*\*\*, Jong-Ho Lee(이종호)\*\*\*\*\*

Received: April 20, 2014. Revised: June 01, 2014. Accepted: June 16, 2014.

### Abstract

**Purpose** – In general, researchers try to abide by the code of research ethics, but many of them are not fully aware of plagiarism, unintentionally committing the research misconduct when they write a research paper.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researchers a clear and easy guideline at a conference, which helps researchers avoid accidental plagiarism by addressing the issu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building a climate and encouraging creative research among schola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ults** – Plagiarism is considered a sort of research misconduct along with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It is defined as an improper usage of another author's ideas, language, process, or result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Plagiarism has nothing to do with examining the truth or accessing value of research data, process, or results. Plagiarism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a research corresponds to widely-used research ethics, containing proper citations. Within academia, plagiarism goes beyond the legal boundary, encompassing any kind of intentional wrongful appropriation of a research, which was created by another researchers. In summary, the definition of plagiarism is to steal

other people's creative idea, research model, hypotheses, methods, definition, variables, images, tables and graphs, and use them without reasonable attribution to their true sourc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plagiarism. Some people assort plagiarism into idea plagiarism, text plagiarism, mosaic plagiarism, and idea distortion. Others view that plagiarism includes uncredited usage of another person's work without appropriate citations, self-plagiarism (using a part of a researcher's own previous research without proper citations), duplicate publication (publishing a researcher's own previous work with a different title), unethical citation (using quoted parts of another person's research without proper citations as if the parts are being cited by the current author). When an author wants to cite a part that was previously drawn from another source the author is supposed to reveal that the part is re-cited. If it is hard to state all the sources the author is allowed to mention the original source only. Today, various disciplines are developing their own measures to address these plagiarism issues, especially duplicate publications, by requiring researchers to clearly reveal true sources when they refer to any other research.

**Conclusions** - Research misconducts including plagiarism have broad and unclear boundaries which allow ambiguous definition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It seems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have clear understandings of ways to avoid plagiarism and how to cite other's works properly. However, if guidelines are developed to detect and avoid plagiarism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discipline (For example,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might be able to have different standards on plagiarism.) and shared among researchers they will likely have a consensu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ssue. Particularly, since duplicate publications has frequently appeared more than plagiarism, academic institutions will need to provide pre-warning and screening in evaluation processes in order to reduce mistakes of researchers and to prevent duplicate publications. What is critical for researchers is to clearly reveal the true sources based on the common citation rules and to only borrow necessary amounts of others' research.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ongsoong-dong), Daehak-ro, Jongro-gu, Seoul, Korea. TEL (work): +82-2-3668-4683. Email: ygodson@knou.ac.kr.

\*\*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SUNY Empire State College, USA, Tel: 315-773-6139. E-mail: Dongho.kim@esc.edu.

\*\*\* Professor, College of Health Industry, Eulji University, Korea, Tel: +82-10-2263-7292. E-mail: retail21@hanmail.net.

\*\*\*\* Professor, Administrative Sciences Department, Boston University, 808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USA, Tel: 617 358 5627. Fax: 617 353 6840. E mail: jwlee1119@yahoo.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Tel: +82-10-8324-2246. E-mail: leejh@kongju.ac.kr.

**Keywords:**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s, Quotation, Research Ethics.

**JEL Classifications:** E00, G00, H00, M00.

## 1. 서론

표절이라는 정의에 대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이라고 밝히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그러나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표절에 대한 기준과 침해정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유통과학회(KODISA)에서는 연구윤리규정에서 표절에 관해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을 표절논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중 게재 또는 논문 표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논문의 투고(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표절의 판단 시점을 두고 이후부터 게재 이후까지 확대하여 연구자의 엄격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KODISA, 2014). 한 예로 한국유통과학회(KODISA)의 유통과학연구(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중복임이 판정되어 2013년 12월 30일 해당 논문을 삭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유통과학회(KODISA)는 [연구윤리규정 11조]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 제11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②기 게재된 논문은 「유통과학연구」에서 삭제하고,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등재지 선정이후에는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또한 「유통과학연구」 및 학회 홈페이지(www.kodisa.org)에 공지한다.

③연구 부정직 혐의로 최종 판정을 받는 자는 3년간 학회원에서 강제 탈퇴되며, 「유통과학연구」에 게재를 못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연구 부정직 행위가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본 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연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조속히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상기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7.16.개정)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과 이중 게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이중 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먼저 표절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

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⑤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⑥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절이라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절의 판단과 연구윤리의 준수의 가이드라인을 학회에서 분명하고 쉽게 공지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논란이 될 수 있는 표절의 문제에서 연구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독창성 있는 연구를 권장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연구의 특성상 표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결론 이전의 본문에서는 부득이 상당수 관련문헌들을 그대로 재인용함으로써 원저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 2. 본론

### 2.1. 표절의 정의와 저작권 침해와의 구분

일반적으로 표절은 사람들의 창작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표절이라는 의미의 영어 ‘plagiarism’은 ‘유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lagiarium’에서 유래했고, ‘장물’의 의미를 가진 ‘plunder’ 역시 ‘불법점유, 무단사용’의 뜻에서부터 ‘표절’을 의미하게 되었다. ‘piracy’는 ‘해적질’이라는 그리스어 ‘peirates’에서부터 ‘표절’의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발행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권까지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Hong, 2008).

표절은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이지만 일반적인 저작권침해와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양 발표한다’는 고의의 행위요소가 첨가되어 있어,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경우이다. 표절의 전형적인 방법은 ‘출처를 감춘다.’는 것에 있으므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표절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와 동시에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의 명시무 위반(저작권법 제138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출처의 표시 없이 몰래 따다 쓰면 비보호저작물이든 보호저작물이든 표절에 해당되고, 다만 그 효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보호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어 저작재산권이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도덕적 범주의 표절개념은 여전히 남게 된다(Hong, 2008).

즉, 표절은 타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들테면 저작권 보호기간의 종료, 완성되지 못한 저작물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성립된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표절로서 법률상의 문제도 발생시키지만, 후자는 넓은 의미의 표절로서 윤리적인 문제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학술논문에서 표절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을 고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법률상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절은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모형, 연구가설, 연구방법, 개념, 변수,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하는 학문적 분야의 절도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Kim, 2007).

## 2.2. 표절과 연구부정행위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위조나 변조 등과 구별되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데이터나 연구내용의 진위나 가치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표절의 기준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의 적절한 인용절차가 있었느냐가 판단근거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4).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의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2.3. 표절의 일반적인 유형

표절의 유형에 관해 Kwack(2007)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게

재하는 경우이다.

② 사용정보의 출처에 대한 부정확한 인용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인용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본문에는 인용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포함)이다.

③ 사용정보의 출처는 제시하지만 인용부호 없이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이다.

④ 원저자가 작성한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그대로 또는 종합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공동저자로 발간하는 단행본이나 발표하는 논문(석박사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생,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포함)이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학술논문에 공저자를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⑥ 원출처를 인용한 제2차 출처로부터 원출처에 제시된 글의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제2차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출처만 제시하는 경우이다.

⑦ 논문 심사자가 제시한 비평이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원고를 수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⑧ 출처를 인용한 경우라도 본인의 저술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빌려온 경우이다.

⑨ 자기표절로 간주되는 이미 출간된 본인의 저술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저널의 편집자나 독자들에게 중복 출판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⑩ 저자가 소속 대학연구소 논문집에 투고한 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전문 학술지에 다시 투고하여 게재하거나 동일한 논문을 2개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이다.

⑪ 하나의 학위논문이나 보고서를 2편 이상으로 분리하여 학술지에 각각의 학술논문으로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또한 표절의 유형에 관해 Kim(2008)은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아이디어 왜곡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아이디어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이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문헌의 인용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텍스트 표절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로 보아도 무방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는 유형이다. 셋째, 모자이크 표절은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가 발견해 내기 어려운 표절 유형이지만, 해당 전문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왜곡은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자신이 쉽게 풀어쓸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인용문을 짧게 줄일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인용문의 핵심적인 생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Kim, 2008).

이처럼 표절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표절로 간주하기도 하고 표절의 심각성에 대해 유형별로 차별을 두기도 한다. Nam(2009)은 “표절은 가장 좁게 보면 자기표절/ 중복게재를 제외한 타인 표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최협의), 좁게 보면 여기에 저작권 침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고(협의), 넓게 보면 여기에 위조, 변조, 저작자 부당표시와 같은 연구윤리 전반에 걸친 것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광의)”고 함으로써 광의 개념에서 위조와 변조를 표절에 포함시켰다(Lee, 2009). 또한 Lee(2009)는 표절의 유형에 대해 타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미 출간된 자신의 글을 일부 인용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자기 표절 또는 자기 복제),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또 다른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중복게재), 타인의 연구에서의 인용문을 재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비윤리적인 인용)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Kwack(2007)과 Lee(2009)는 “학술논문에서 인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학술논문 작성자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용정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학술논문 작성자가 원래의 저작자인 것처럼 도용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용과 표절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사용정보의 출처 및 저작자 표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여부”에 있다고 하였다. Lee(2011)는 국내의 문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절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여러 학회지와 학술대회에서 표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그에 따르면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받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이다. 만일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이 쓴 독특한 표현이나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이다. 또한 가져온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던 상관없이, 베낀 글이나 아이디어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때에도 표절이다. 그러므로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인용하는 것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2.4. 표절과 이중 게재

이상의 관련연구를 볼 때 표절의 유형은 단순화하여 크게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또는 불완전하게 인용하는 경우(출처표시에 관한 표절)와 자신의 저작물을 중복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이중 게재에 의한 표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2.4.1. 출처표시에 관한 표절

표절여부의 출처표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출처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는 표절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용부분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경우에만 표절로서의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출처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피인용물을 숨기고 자신의 저작물로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부분의 양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검색하여 찾아낸 문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주에서 인용하는 경우는 인용출처가 외국어로 된 문헌이거나 오래되거나 희귀한 도서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원출처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2차 출처 논문의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원출처를 직접 찾아낸 것처럼 2차 출처 논문을 배제하고 원출처를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재인용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재인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이 문제 될 수 있다. 즉 재인용을 통해 2차 출처와 원출처를 동시에 기재할 경우에만 표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원출처가 여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원출처만 표시하면 된다는 견해(Kim, 2008)는 원출처를 발굴한 2차 출처 저자의 노고를 무시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출처와 2차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원출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2차 출처를 생략하고 바로 원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원출처를 인용하여 쓴 2차 출처에 의거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 재인용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출처만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 2.4.2. 이중 게재에 의한 표절

자기표절 또는 이중 게재(중복게재) 저술의 경우, 즉 자신이 이미 한번 발표한 저술의 일부를 새로운 저술에서 중복하여 쓰거나 일부 변형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표절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 등 소유권의 타인 귀속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부정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의 자기표절은 용어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표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중 게재라는 명칭으로 표절과 구분하여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한 서울대학교의 사례가 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의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이중 게재와 관련한 이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 게재로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많은 학술지들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연구자가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와 무관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 게재라는 명칭은 출판물의 재사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의 자신의 저작물을 재사용하는 행위(자기표절 또는 자기복제)를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다. 학위논문은 이중 게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추후에 연구논문으로 출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 견해이다. 그러나 임용이나 승진, 연구비 수주 등 논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비교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같은 또는 비슷한 주제의 학위논문과 출판된 연구 논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 판단의 주체로서 학회(기관)가 이중 게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분량이나 연구의 깊이가 일반 논문에 비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뉘어져서 출판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것이 연구 성과를 표면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큰 유혹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공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연락저자), 공저자 등 다양한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중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과거에 출판한 저작물을 재사용하더라도 일명 자기표절의 혐의에서 면제해 줄 요인들을 Samuelson(1994)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 ① 두 번째 저작을 통해서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기존의 발표 내용을 다시 개진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을 다시 제시해야 할 때.
- ③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 ④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즉 정보의 확산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과거 문건의 재사용을 명확히 밝힐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적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 3. 결론

#### 3.1. 요약과 정리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것이든지 프로시딩에 있는 것이든지 당연히 표절로 취급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어에 관하여 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당연히 표절이다. 이중 게재로서 같은 논문을 2곳 이상에 게재한 다음, 양쪽을 모두 본인의 승진 등의 실적 점수를 쌓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연구비를 받았을 경우에도 표절이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글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작권과의 관련성에서 여러 의견이 아직 존재한다. 즉,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가 이중 게재(자기표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외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학회에서는 대부분 논문 저자에게 저작권 위임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학회 등 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추후에 저자가 자기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인 학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면, 저자가 학술대회 등에 투고하면서 학회에 저작권을 위임하지 않으려면 초록(abstract)만 제출하고 학회사무국에는 다른 학회(기관)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서는 프로시딩의 경우에는 다른 학회(기관)에 투고하여도 양해한다는 연구윤리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저자들의 저작권을 배려해 주기도 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위논문을 출판하면 이중 게재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중 게재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일부에서는 주석을 달아서 이 논문은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는 이중 게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설령 주석을 달지 않고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출판을 하더라도 학위논문은 출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논문발표(Unpublished Dissertation)이기 때문에 학회(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주석을 달지 않았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저널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학계의 일반적인 윤리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3.2. 실무적 시사점

표절은 타인의 창작과 표현물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임의로 가져다가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표절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의식적으로 표절을 인지하는 고의적인 경우 보다는 표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표절은 사람들의 창작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절의 유형과 사례를 학회(기관)에서 공지함으로써, 선량한 많은 연구자들의 의식적인 연구윤리 준수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표절의 종류 중에 사용정보의 출처 제시 없이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과 같은 악의적인 경우는 발견이 쉽지 않은 반면, 원저자가 작성한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발전시켜 자신의 이름이나 공동저자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제목이나 핵심어의 유사성 때문에 문헌검색을 통해 발견이 쉽다. 즉 이중 게재(자기표절)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정당한 승인 절차 또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없다고 간주하여 연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빈번히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회(기관)에서는 투고 논문의 이중 게재의 방지를 위해 사전 공지, 심사단계에서의 스크리닝 등을 통해 선량한 연구자의 실수를 방지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한편 최근 단독보다는 공동집필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책 또는 논문이 공동으로 저술된 이후에 공동저자 중 일부가 같은 주제로 단독 출판할 경우에 저작권침해 또는 표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 별도로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공저 형태로 만든 것이라면 제목이나 형식이 공저인 것과 관계없이 저자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중 게재의 판단기준은 저자의 집필분량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저자의 집필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학위논문 또는 학술논문의 이중 게재와 관련하여 발

생되고 있는 표절 시비는 자신의 연구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인용이나 발췌 사실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거나 권고함으로써 학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 3.3. 토론과 제안

표절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는 광범위하고도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모호한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방법을 한마디로 기술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각 학문 분야(이러테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표절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의 특징에 따라 별도의 표절기준을 마련하고 표절방지를 위한 합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타인의 저작물(표절의 대상)이나 과거의 본인 저작물(이중 게재의 대상)이나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정당한 분량(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나 표현을 가져다 사용하되 따옴표를 써서 인용임을 정확하고 명백히 밝히거나 인용된 부분의 끝에 저작자의 이름과 출판연도를 밝혀주고, 논문 끝부분의 참고문헌에 그 서지사항을 밝혀주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논문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구자가 분명한 인용을 통해 원출처를 밝히고자 하는 선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즉, 연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물로 위장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표절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연구의 발전은 선행연구의 성과물을 본인의 현재 노력과 결합시켜 미래의 후속세대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꼭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연구성과에 대해 늘 겸손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구윤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로서 표절을 피하는 핵심은 타인이나 자신의 연구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고 필요한 분량만 적절히 활용한다는 데에 있다.

## References

- Hong, Sang-Hyeon (2008). A Legal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ment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11(2), 85-109.
- Kim, Ki-Tae (2008). A Study On Write Papers And The Problems Of Formalism For Proper Citation Methods. *Korea Chulpanhak Research*, 34(1), 65-92.
- Kim, Yong-Kwon (2007). Research Ethic and Plagiarism. *The Korean Society for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1(2), 299-303.
-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2014a). *Guideline for Submission*. Kyugkido, Korea: KODISA. Retrieved May 30, 2014, from <http://kodisa.org/submission1/12615>.
-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2014b). *Guideline for Submission*. Kyugkido, Korea: KODISA. Retrieved May 30, 2014, from <http://kodisa.org/notice/15349>.
- Kwack, Dong-Chul (2007). A Study on the Types of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Practices of Writing Research Pap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103-126.
- Lee, In-Jae (2009). Problems of Redundant Publ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Ways of Research Ethics. *Journal Korean Philosophy*, 26, 305-323.
- Lee, In-Jae (2011). Academic Communities and Research Ethic. *Proceedings of the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pp.363-392). Seoul, Korea: Families as Social Capital.
- Lee, Jong-Moon (2009). A Study on the Main Cause and Controversy in Academic Plagiarism. *Journal of Korean Civil Ethical*, 22(2), 1-24.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4). *Research ethics guideline of MEST(Research Ethics Information Centre)*. Retrieved May 30, 2014 from [Http://www.cre.or.kr/article/misconduct\\_media/1382443](http://www.cre.or.kr/article/misconduct_media/1382443).
- Nam, Hyung-Doo (2009). Articles : Case Research on Plagiarism -Focused on Academic Works. *Lawyers Association journal*, 58(5), 259-320.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y 30, 2014.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Samuelson, Pamela (1994). Self-Plagiarism or Fair Use? *Communications of the ACM*, 37(August), 21-25.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Research Ethics Guidelines*. Retrieved May 30, 2014 from [Http://www.snu.ac.kr/research/images/down/research\\_08.pdf](http://www.snu.ac.kr/research/images/down/research_08.pdf).